

「직원 성과급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1. 1. 22. 개정 판 (시행 2020. 9. 1.) → 2022. 3. 7. 개정 판 (시행 2022. 2. 1.)

바뀜 2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164/compare?from=1060&to=1276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2. 오후 4:08:26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구성 및 임기)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〈개정 2021-01-22〉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(위원장), 기획처장(서기), 교목처장, 교무처장, 학생처장, 사무처장, 대외협력처장, 연구산학처장, 입학관리본부장, 재무실장, 예산팀장, 기획평가팀장, 교수(2), 직원(1)으로 한다. 〈개정 2016-02-29〉〈개정 2021-01-22〉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한다.	제8조(구성 및 임기)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〈개정 2021-01-22〉 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(위원장), 기획처장(서기), 각 처장, 총장특보, 재무처장, 예산팀장, 기획평가팀장, 교수(2), 직원(1)으로 한다. 〈개정 2016-02-29〉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〈개정 2022-03-07〉
제10조(기능) 본 위원회는 제 11조(직원 성과상여금 평가)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(지급기준, 지급율, 기준액, 기타)을 심의 한다. 〈개정 2016-03-01〉	제10조(기능) 본 위원회는 제 11조(직원 성과상여금 평가)에 의거 성과상여금 지급에 관한 제반 사항(지급기준, 지급율, 기준액, 기타)을 심의 ·의결한다. 〈개정 2016-03-01〉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조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직원 성과급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8조(구성 및 임기) ①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성과상여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부총장(위원장), 기획처장(서기), 각 처장, 총장특보, 재무처장, 예산팀장, 기획평가팀장, 교수(2), 직원(1)으로 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 중으로 하며,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제10조 중 "심의한다"를 "심의·의결한다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